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가단50781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 2020. 12. 22.

판결 선고 2021. 2. 2.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2016. 12.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431,87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31,8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18938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바, 위 사건에서 2015. 3. 23.자로 'D은 E에게 1,218,307원 및 그 중 1,000,002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3.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위 결정은 2015. 4. 9. 확정되었다.

나. E는 2018.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E의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E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위임을 받은 원고는 2018. 7. 23. 내용증명우편으로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5. 5. 23. D의 부(父) F와 모(母) 피고가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부동산이었는데, 2016년경 F가 사망하여(이하 '고인'이라고 한다) 배우자인 피고(법정상속분 3/7)와 자녀인 D, G(법정상속분 각 2/7)가 고인을 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은 2016. 12.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고인 명의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를 전부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고인의 다른 상속재산은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존재하던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중 2011. 11. 11. 등기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H조합인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12. 27.자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7. 5. I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할 당시 D의 개인신용정보도 양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분할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았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3. 16.에 이르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2018. 7. 5. 양수한 D의 개인신용정보에 D 소유가 아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협약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5. 24. 이 사건 부동산이 이전된 내역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갑 제5호증이 발급된 2020. 2. 5.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분할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분할협약 당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 외에도 2014년 8월경부터 J카드에 1,108,000원, 한국자산관리공사(K)에 6,642,000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7. 1. 4. 고용노동부에 31,317,000원, 2014. 8. 1. 국세청(고양세무서)에

5,000,000원, 2014. 2. 4. 국세청(반포세무서)에 5,000,000원의 각 체납액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L, M카드 등에 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는 D의 근로소득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합계 1,680만 원 뿐이고,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D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D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속포기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이가 실질적으로는 D의 상속포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분할협이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양자는 그요건과 효과,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포기와 같게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고인은 생전에 그 소유의 아파트를 D이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의 대출채무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었다. 이는 고인이 D에게 위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증여를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협이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결과는 D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고,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된다. 한편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이 담보를 제공한 주채무자는 D이 아닌 N이다. 따라서 N에 대한 담보제공 및 경매매각에 따른 채무변제를 D에 대한 증여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D이 N의 주식 14만 주 중 98,400주를 그 자신(26,300주) 또는 그가 지분 90%를 가졌다는 다른 주식회사(주식회사 0, 72,100주) 명의로 소유한 N의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N은 D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고, 고인은 D이 아닌 N에 직접 담보를 제공하였다. N과 D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N에 대한 담보의 제공이 D에 대한 증여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달리 D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인정할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재산 분할결과가 D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 취소

이 사건 분할협의 중 피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 즉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고인 명의의 1/2 지분(이 사건 부동산) × D의 법정상속분 2/7]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존재하였던 H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후 말소된 사실은 위 1.의 라. 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가격 기준 4억 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데(이 사건 소장) 이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가액 4억800만 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 및 6,500만 원의 H조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위 부동산 중 D의 상속분 상당액은 68,285,714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 8억 1,6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4억 800만 원 × 2)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3억 3,800만 원(= 2억 7,300만 원+ 6,500만 원)} × 2/14(피고의 상속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2020. 3. 14. 현재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원리금이 2,431,879원[= 1,218,307원 + {1,000,002원 × 연 23.7% × 1,869일(2015. 1. 31. ~ 2020. 3. 14.) / 365일}]임은계산상 명백하다.

위 피보전채권액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피보전채권액인 2,431,879원의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 결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2,431,87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31,8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서초구 다세대주택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74.3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 240.8㎡

대지권의종류: 1. 소 유 권

대지권의비율: 240.8분의 38.43

